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10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근거법 「측량법」 폐지 및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시행
-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

4. 주요골자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명칭 개정(안 제1조)
-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
- 회의록 작성 및 보고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동 조례의 근거법인 「측량법」 폐지 및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2009년 12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칭을 개정하고
-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법령명칭 정비와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